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12. 15.

행정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2020년 11월 12일

나. 발 의 자: 박미영 의원 외 4명

다. 회부일자: 2020년 11월 19일

라. 상정일자: 제227회 영등포구의회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2020. 12. 7.)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박미영 의원)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 적극적인 국제기구 등 유치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전하기 위하여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 국제기구 등 유치 기반 조성 및 지원(안 제4조 ~ 제5조)

- 국제기구 등 지원시설 설치 운영(안 제6조)
- 국제교류협력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8조 ~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옥연)

- 본 안건은 영등포구가 국제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전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국제기구 유치 등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총 12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었음.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는 본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한 규정으로 국제교류 협력 대상인 “국제기구 등”에는 국제연합기구 외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재단·연구소·비영리단체·협의체 등 까지 포함하고 있음.
 -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국제기구 유치기반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의 행정·재정적 지원 규정과 국제기구 등의 지원시설의 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음.
 - 이 같은 국제기구 유치는 해외자본 직접투자, 고소득 외국 소비주체의 국내 유입 등 직·간접적 경제효과가 매우 크고 글로벌 수준의 실력을 갖춘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기회와 함께 일자리 창출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그러나, 국제기구의 유치가 해당 도시의 글로벌화 지수 혹은 국제 선도도시로서의 위상 제고에 얼마나 기여할지 계량화하기 어렵고, 국제기구 유치를 통한 직·간접의 효과에 대해서도 단정하기 곤란함.
 - 또한, 비용추계에 따르면 3년간의 국제기구 등 지원시설의 설치·운영에 따른 예산이 107억 원에 달하여 국고보조금이 편성되지 않을 경우 사업의 수

혜성 및 효과성을 감안할 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조달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됨.

-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국제교류협력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음.

○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법규체계 및 자구 등을 검토한 바 특이사항이 없으며,
- 다만, 이 조례의 제정을 계기로 계량화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하지만 국제교류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우리 구에 이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국제교류를 추진해야 하고, 국제기구 등의 유치 시에는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박미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282호
----------	-------

발의년월일: 2020년 11월 일

발의자: 박미영 의원 외 4명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 적극적인 국제기구 등 유치로 통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전하기 위하여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국제기구 등 유치 기반 조성 및 지원(안 제4조 ~ 제5조)

다. 국제기구 등 지원시설 설치 운영(안 제6조)

라. 국제교류협력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8조 ~ 제11조)

3. 제정안 : “별첨”

4.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붙임

나. 입법예고(2020. 11. 16. ~ 11. 20.):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 국제기구 등 유치를 통해 국제교류협력을 증진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교류협력”이란 국가적 경계를 초월하여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제도·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2. “국제기구 등”이란 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전문기구, 정부 간기구, 지방자치단체 간 기구를 포함한 준정부간기구, 국제비정부기구 및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재단·연구소·비영리단체·협의체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국제교류협력 증진과 국제기구 등 유치(이하 “국제교류협력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국제기구 등 유치 기반의 조성)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고 한다)에 국제기구 등 유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국제기구 등 관련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연구

2. 국제기구 등 유치를 위한 전문인력 및 정보의 국제교류
3. 국제기구 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4. 그 밖에 국제기구 등의 유치 또는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국제기구 등 유치 지원범위 등) 구청장은 효율적인 국제기구 등 유치 활동과 유치가 확정된 국제기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해당 국제기구 등의 유치에 관한 국내·외 홍보
2. 해당 국제기구 등과 관련되는 자료의 제공
3. 국제기구 등의 개소 및 운영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4. 국제기구 등과의 공동협력사업
5. 그 밖에 국제기구 등의 유치 또는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국제기구 등 지원시설의 설치 운영) ① 구청장은 국제기구 유치기반 조성 및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한 지원시설(이하 “국제기구 등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국제기구 등 지원시설에 우선적으로 국제기구를 유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국제기구 등 지원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기관 등에 위임·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사무를 위탁할 때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국제교류협력 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내·외 기관, 단체, 대학 또는 국제기구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제8조(국제교류협력 자문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국제교류협력 등 업무 추진을 위하여 국제교류협력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지원을 한다.

1. 구 홍보 및 위상 제고
2. 해외도시 및 해외소재 기업·단체·기관 등과의 교류협력 사업
3. 국제기구·외국기관 및 투자의 유치, 국제행사 유치·개최
4. 구 대표단의 국외출장 및 해외인사와의 교류
5. 국제관계 동향 및 해외정보 제공
6. 그 밖에 구의 국제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

제10조(위원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국제교류협력 등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의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의 국제교류협력 등 사업에 적극적인 협력이 가능한 사람
2. 해외 해당도시의 유력 인사
3. 투자·무역·경영 등 글로벌 경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5. 그 밖에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기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이유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내역 : 국제기구 등 지원시설의 설치 운영(조례 제6조)을 위한 시설비, 임대료 등 비용 및 국고보조금 세입
2. 비용추계 기준 : 지원시설 설치 예정 지역인 여의도 기준 임대료 추계, 임대기간 3년(예정), 유사 지원시설 시설비 및 관리비 기준으로 비용 추계
3. 비용추계 상세내역 : 여의도 임대오피스(파크원) 기준 1년기준 임대료, 관리비 추계(1차년도 7개월, 4차년도 5개월), ‘서울시 국제금융오피스’ 기준 관리비, 시설비, 위탁용역비 추계
4. 비용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세입	○국고보조금	4,800,000	2,468,000	2,468,000	1,028,000	-	10,764,000
	소계(a)	4,800,000	2,468,000	2,468,000	1,028,000	-	10,764,000
세출	○보증금	1,210,000	-	-	-	-	1,210,000
	○시설비	1,680,000	-	-	-	-	1,680,000
	○설계비	137,000	-	-	-	-	137,000
	○임대료	637,000	1,092,000	1,092,000	455,000	-	3,276,000
	○관리비	336,000	576,000	576,000	240,000	-	1,728,000
	○위탁용역비	800,000	800,000	800,000	333,000	-	2,733,000
	소계(b)	4,800,000	2,468,000	2,468,000	1,028,000	-	10,764,000
□ 총 비용(a-b)		0	0	0	0	-	0

5.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국비		4,800,000	2,468,000	2,468,000	1,028,000	-	10,764,000
시비	지방세수입	-	-	-	-	-	-
	세외수입	-	-	-	-	-	-
	지방채 등	-	-	-	-	-	-
민간		-	-	-	-	-	-
기타		-	-	-	-	-	-
합계		4,800,000	2,468,000	2,468,000	1,028,000	-	10,764,000

6. 추가의견: 현재 2021년 예산 국회 증액 대상사업 신청 중으로
국회 의결에 따라 재원조달 방안 변경 가능

7. 작성자

작성자 이름	미래비전추진단 비전협력과 김용우
연락처	02-2670-7533